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537
----------	-------

발의연월일 : 2025. 8. 29.

발 의 자 : 박용갑 · 박희승 · 염태영
권칠승 · 윤준병 · 이병진
황명선 · 소병훈 · 조인철
정준호 · 한준호 · 이연희
서삼석 · 장종태 · 장철민
손명수 · 박상혁 · 문진석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 강동구와 경기도 광명시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특히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일평균 1,600톤 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출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가능성을 점검하는 등 관리나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에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거나 지하시설물·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자에게 현장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긴급안전조치를 규정하여 지하수 및 유출지하수 이용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제37조의2제1호의2 및 제39조제1호의2 신설).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9(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유출지하수의 기준, 발생현황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2.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
3.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

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기준 이상으로 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 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9(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발생현황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유출지하수의 기준, 발생현황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u> <u>1.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u> <u>2.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자</u> <u>3. 제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u> <u>②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u>

제3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2. ~ 4. (생략)

제3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략)

<신설>

는 기준 이상의 유출지하수 발생으로 지반침하의 우려가 생긴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의2(벌칙) -----

ㄱ.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9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4. (현행과 같음)

제39조(과태료) -----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2제1항 및 제9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2. ~ 8. (생략)	<u>유출지하수가 발생하는 경우</u> <u>그 발생현황을 신고하지 아니</u> <u>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2. ~ 8. (현행과 같음)
--------------	--